#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7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 5. 23.

4. 회부일자 : 2025. 5. 29.

# Ⅱ. 제안이유

○ 2024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월금을 반영하고, 공정률 상승에 따라 건립 공사 촉진을 위한 2025년도 시설비 지출계획 증액과 이월금 집행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 1. (2024년도 말 조성액) 총 46,299,962천원 증가

○ 2024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월금 반영

(단위: 천원)

		증감		
기정(A)	실제 예차금 화수 금액		소계	(C=B-A)
	1	2	(3=1+2)	
68,326,017	71,506,707	43,119,272	114,625,979	46,299,962

#### 2. (수입계획) 총 46,130,384천원 증가

○ 2024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최종 예치금과 2024년도말 발생하여 2024년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이자수입 반영

(단위: 천원)

기정(A)	예치금 회수 (2024년도말 조성액) ①	이자수입 ②	소계 (③=①+②)	변경 후 지출계획 (C=A+B)
83,442,646	46,299,962	Δ169,578	46,130,384	129,573,030

#### 3. (지출계획) 총 46,130,384천원 증가

○ 공정률 상승에 따라 건립 공사 촉진을 위한 2025년도 시설비 지출 계획 증액과 이월금 집행 반영

(단위: 천원)

		변경 후 지출계획		
기정(A)	시설비 증액	이월금	소계	(C=A+B)
	1	2	(3=1+2)	,
83,442,646	3,011,112	43,119,272	46,130,384	129,573,030

#### 4. 수입·지출계획 변경 내용

(단위: 천원, %)

							\ — · ·	/ , , , ,
	수 입	계 호	<b></b>		지	출 계	획	
항목	변경(A)	기정(B)	증 감 (C=A-B)	항목	변경(A)	기정(B)	증 감 (C=A-B)	증감율 (D=C/B)
합 계	129,573,030	83,442,646	46,130,384	합 계	129,573,030	83,442,646	46,130,384	55.28%
교특회계 전입금	7,800,000	7,800,000	-	비융자성 사업비	129,573,030	83,442,646	46,130,384	55.28%
 예치금 회수	114,625,979	68,326,017	46,299,962	기본 경비	-	-	-	
이자수입	7,147,051	7,316,629	△169,578	예치금	-	-	-	-

####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2025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875호로 제출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근거로 하여 2016년 설치된 것으로<sup>1)</sup>,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조성 중인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음.

<sup>1) 2024</sup>년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기금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변경되었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8조는<sup>2)</sup>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같은법 제11조제2항은<sup>3)</sup> 기금운용계획 상 정책 사업 지출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시교육청이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수입계획 상 '이자수입'을 73억 1천 7백만원에서 1억 7천만원 감소한 71억 4천 7백만원으로, '예치금 회수'를 683억 2천 6백만원에서 463억원 증가한 1,146억 2천 6백만원으로, 지출계획상 '기관운영(비융자성사업비)'를 834억 4천 3백만원에서 46 1억 3천만원 증가한 1,295억 7천 3백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기금변경안은 개별정책사업인 '기관운영'의 지출금액을 당초 기금운용계획(834억 4천 3백만원) 대비 55.28% 증가시키고자한다는 측면에서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대상임.
- 이어 동 변경안은 절차적으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sup>4)</sup> 변경 목적 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sup>2)</sup>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sup>3)</sup>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u>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up>1. 「</su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sup>2. 「</sup>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sup>4) 2025</sup>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회의록 첨부) (서울시교육청 청사 이전투진단-1269, 2025.3.12.)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건립 공사 촉진을 위한 것으로 절차나 변경 목적의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감소와 예치금 회수에 따라 발생한 461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초 수입계획 대비 예치금회수는 463억원이 증액한 데반해 이자수입은 1억 7천만원이 감소함.
  - 이 중 예치금은 2024년 기금결산 결과 이월금 431억 2천만원과 집행잔액 30억 1천만원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수립 시 예측한 예치금 회수액 683억 2천 6백만원보다 예치금 회수액이 463억원 증가되었음.
  - 또한, 이자수입은 사업추진 일정, 예금상품별 수신금리 변화<sup>5)</sup> 등과 연계하여 예상 이자 수입을 반영하기 위해 당초 73억 1천 7백 만원 대비 1억 7천만원 줄어든 71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따라서 동 변경안의 수입계획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회계상 변동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이자수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표-1] 2024회계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6)7)

(단위: 천원)

과목	지출계	지출계획액 전년도 지출계획 지층애			다음연도		
정 단 세 사업 책 위 부 내역	당초	수정①	<b>이월액</b> ②	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이월액 ⑤	
소 계	95,422,268	135,588,102	6,697,482	142,285,584	99,165,099	43,119,272	
기관운영	41,799,993	66,601,293	6,697,482	73,722,775	27,658,391	43,119,272	

<sup>5)</sup> 동 기금의 이자수입은 '교육금고의 예금상품별 수신금리'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정기예금 수신금리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금년 중 기금 소진 예정임에 따라 예치 기간 역시 짧아지면서 감소가 예측됨. (기금 금리는 시의원 (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1131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13891, 2025.5.30.) 등을 참조)

<sup>6) 2024</sup>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 12쪽.

<sup>7) 2024</sup>회계연도의 이월금은 431억 2천만원이고, 신청사건립(사업) 지출현액 737억 8천 9백만원에서 지출액 276억 5천 8백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431억 1천 9백만원을 제외한 비용은 30억 1,113만원임.

			과목		지출계	지출계획액 전년도 지		지출계획	TI츠애	다음연도
정 책		세 부	사업 내역	목	당초	수정①	<b>이월액</b> ②	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이월액 ⑤
	П	1육	행정기	관시설	41,799,993	66,601,293	6,697,482	73,722,775	27,658,391	43,119,272
		기	관시설	유지관리	41,799,993	66,601,293	6,697,482	73,722,775	27,658,391	43,119,272
			신청	!사건립	41,799,993	66,601,293	6,697,482	73,788,775	27,658,391	43,119,272
				건설비	41,799,993	66,601,293	6,697,482	73,298,775	27,658,391	42,863,956
				유형자산	0	490,000	0	490,000	0	255,315
	재무활동		53,622,275	68,496,809	0	68,496,809	71,506,708	0		
	예치금		<u></u>	53,622,275	68,496,809	0	68,496,809	71,506,708	0	
			예계	[]금	53,622,275	68,496,809	0	68,496,809	71,506,708	0
			여	치금	53,622,275	68,496,809	0	68,496,809	71,506,708	0
				예치금	53,622,275	68,496,809	0	68,496,809	71,506,708	0

- 이어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당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2024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이월이 확정된 431억 1천 9백만원을 반영하고, 건설비 30억 3천 3백만원을 증액하되 미술작품 설치비 2천 2백만원을 감액하여 기관운영(비융자성사업비)에서 30억 1천 1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2024회계연도 당시 지출계획 현액 737억 8천 9백만원에서 30억 1천 1백만원이 사업비의 미지출로 인하여<sup>8)</sup>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밝힌바 있음.

#### [표-2] 2024년 '기관운영' 중 지출 내역의

(단위: 천원)

항목	지출계획 금액 (A)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설계비	0	0	0	0	0	0
시설비	64,663,141	5,817,258	70,480,399	26,700,006	41,188,185	2,592,208
감리비	1,770,000	880,224	2,650,224	880,224	1,651,140	118,860
부대비	168,152	0	168,152	78,161	24,632	65,359
급식기구	490,000	0	490,000	0	255,315	234,685
합계	67,091,293	6,697,482	73,788,775	27,658,391	43,119,272	3,011,112

<sup>8) 2025</sup>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각주 3 참조

<sup>9) (</sup>청사이전추진단)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제출(1152번)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 추진단-2814, 2025.5.30.)

- 따라서 금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서 지출계획 상 증액된 부분은 2024년 이월액과 2024년 당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2025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술한 사항을 종합할 때 동 변경안은 그 취지가 "공정률 상승에 따라 건립 공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 "계획 대비 공정률 저하로 인해 지출 일정이 조정된 이월액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업 관리에 보다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예치금 편성 없이 기금 조성액 전액을 집행할 것임을 계획하고 있고, 공사 관련 주요 계약의 준공 역시 금년 중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함.

[표-3] 신청사 건립 관련 주요 계약별 일정10)

공종명	차수	계약금액	계약일	(최종)변경 계약일	착공(수)일	준공(예정)일	공사 추진현황	
	총차	81,492,812	2021-12-15	2024-11-11	2021-12-15	2025-11-10		
건축	1차	499,730	2021-12-15	2023-10-11	2021-12-15	2022-09-05	■ 2차 준공 ■ 지상5층 골조공사 및 지하층 내부	
신국 	2차	21,908,729	2022-09-08	2024-11-11	2022-09-06	2024-10-08	■ 시영3등 글소증시 및 시이중 네구 공사 진행중(공정률 61%)	
	3차	59,084,353	2024-10-08	2025-05-12	2024-10-09	2025-11-10		
	총차	6,231,686	2018-10-24	2025-04-29	2018-10-24	2025-12-10		
	1차	492,000	2018-10-24	2019-12-24	2018-10-24	2019-12-31	o+1 7 7	
감리	2차	438,541	2019-12-30	2021-02-23	2019-12-30	2021-01-24	■ 3차 준공 ■ 공사 및 안전관리	
	3차	2,286,559	2021-01-19	2024-10-25	2021-01-19	2024-07-17	- 84	
	4차	3,014,586	2024-07-17	2025-04-29	2024-07-18	2025-12-10		
	총차	5,956,053	2022-02-08	2024-04-15	2022-08-01	2025-11-20	■ 1차 준공	
소방	1차	47,080	2022-02-08	2024-10-14	2022-08-01	2024-09-16	■ 소화배관 및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2차	4,000,000	2024-09-04	2024-12-16	2024-09-17	2025-08-10	진행중(공정률 45%)	
	총차	7,747,193	2022-01-28	2025-04-17	2022-02-07	2025-11-20	■ 1차 준공	
전기	1차	50,000	2022-01-28	2024-06-13	2022-02-07	2024-09-16	■ 전기배관, 배선, 케이블 트레이	
	2차	7,697,193	2024-09-13	2025-05-09	2024-09-17	2025-11-20	공사 진행중 (공정률 46%)	

<sup>10)</sup> 위의 글.

공종명	차수	계약금액	계약일	(최종)변경 계약일	착공(수)일	준공(예정)일	공사 추진현황
74	총차	4,715,248	2022-01-25	2025-03-04	2022-02-03	2025-11-20	■ 1차 준공
정보 통신	1차	48,381	2022-01-25	2024-10-14	2022-02-03		, , , , , , , , , , , , ,
	2차	3,548,192	2024-09-05	2025-03-04	2024-09-17	2025-08-20	공사 진행중 (공정률 40%)

□ 이상으로 「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귀리리(기(기전리 6	0 L 4 (2 100 0200)	ロロエハロ	D 1 T (2 100 0204)